

공법단체, 의사결정 정당성·투명성 확보 시스템 필요

5·18단체 파행 언제까지 <하>

회장 전횡 막을 견제장치 마련... 재정·회계 통제시스템 확보 고질적인 이권 다툼 끝내고 화합 위한 인적·제도적 쇄신 시급

파벌 싸움으로 빚어진 집행부 파행이 1년여 지속되고 있는 5·18공법단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적, 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각각 정기총회를 열기로 하고 신임 회장과 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임 지도부는 파벌 싸움 등 내홍과 재정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정 능력을 갖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선 단체장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법단체 회원들 사이에서는 “단체장이 강력한 결정권을 갖고,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사업 안건이 통과되는 식으로는 회원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없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과 정성국 전 5·18공로자회장은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고수하다 회원들의 반발을 사 각각 직무정지·해임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회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2·19 공동선언서’를 강행하고, 국가보훈부 직원들과 ‘비밀 회동’을 가진 뒤 ‘정율성 역사공원 반대’ 신문광

고를 내는 등 물의를 빚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공법단체 선정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낙관해 사단법인 시절부터 이어진 비리와 내부 문제를 방치했는데, 그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나 사법기관에서 엄정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사리사욕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를 맘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익사업과 회계 등 재정 투명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공법단체 전환 이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자 자연히 알력다툼도 커졌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등과 수익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5·18부상자회에서 비리 및 내홍이 가장 심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등이 5·18부상자회의 생산품을 구입하거나 물건을 매각·임대할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독점 권한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비롯됐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수익사업 수익계약 대상을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각 사건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이권 다툼의 단초가 됐다.

수익사업 계획과 취지,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 회원들도 견강한 견제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18부상자회는 최근에도 의도가 불분명한 수익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자정하고 있다. 5·18부상자회는 지난 1월 수익사업을 하겠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자산 처분 플랫폼을 통해 서울 한강반포2호 매점을 9억 4000여만원을 주고 낙찰받았다.

5·18부상자회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복지사업단이 직접 운영할 것이다”는 입장이지만, 회원들 사이에서는 “5·18과 관련도 없고,

회원 수도 많지 않은 서울 한강변에서 정체불명의 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나”며 반발하고 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돈과 이권이 결려있는 한, 근본적인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누가 차기 집행부에 들어서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세 공법단체가 공동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공동 분배를 하거나, 일정 부분이 반드시 회원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지난 2일로 예정됐던 5·18부상자회 총회는 무산됐다. 총회 구성원 166명 중 직무 정지자를 제외한 반수 78명 이상 출석해야 총회 구성 요건을 만족하는데, 이에 못 미치는 50여명이 출석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5·18부상자회는 다음달 중으로 총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5·18공로자회 또한 지난달 28일야 총회 소집권자(부회장)를 확정했으며, 이달 말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 총회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꾸려 회장·부회장 등 임원 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찾아가는 노인 결핵 검진 대한결핵협회와 광주시 동구보건소 결핵관리실 관계자들이 4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 서석교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 결핵 검진 행사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공공기관 첫 중대재해법, 광주 초고 추락사 살펴보니

홀로 이동식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발견돼

광주·전남 공공기관 중 첫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광주시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고(광주일보 2월 29일자 6면)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고교체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A(64)씨가 사고 당시 홀로 작업하다 추락했다.

이동식 사다리 주요작업 안전 수칙상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 학교 직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당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 혼자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작업자들은 강당 외부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에 A씨가 치료를 받을 골든 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사고가 난 사다리에는 미끄럼·넘어짐 방지 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이동식사다리 작업 안전 수칙상 이동식 사다리는 고소작업대·비계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쉬운 작업에만 사용돼야 한다.

또 3.5m 이하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사다리는 ‘A형’ 사다리만 사용이 가능하고 일자형이나 연장형 사다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른 물건으

로 사다리를 높이는 것도 금지되고 작업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모는 발견됐지만, 안전조치의무위반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 공사 발주처인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원인이 되었을 때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다.

경찰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이 현장의 실질 총괄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지 여부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감찰자료 무단제공’ 박은정 검사 해임... “보복 징계”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윤 총장을 감찰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박 부장검사에게 검사 징계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법무부 검찰담당관이던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인 한동훈 국

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검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검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매일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편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